

『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2차)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8월 3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9일

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
2015년 10월 20일

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된 공동주택부지를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는 지금 조속히 매각하여 공동주택보급을 활성화하고, 공무원아파트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【처분재산】

☐ 선산교리2지구 환지 매각

○ 위 치 : 선산교리2지구 28B 2L(교리1384 <가지번>)

- 대 상 : 토지 42,376㎡(12,819평)
- 기준가격 : 21,188,000천원(가감정액)

【취득재산】

<당 초>

☐ 공무원아파트 신축

- 위 치 : 선산교리2지구 28B
- 대 상 : 아파트 100세대(전용면적 60㎡이하)
- 기준가격 : 14,200,000천원

<변 경>

☐ 공무원아파트 매입

- 위 치 : 선산교리2지구 28B 2L(교리1384 <가지번>)
- 대 상 : 아파트 100세대(전용면적 60㎡이하)
- 기준가격 : 16,000,000천원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동법 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제141회(2009. 4월) 임시회 시 공무원아파트 매각, 신축으로 승인
- 제184회(2014. 2월) 임시회 시 공무원아파트 분양매입으로 변경 승인
- 제195회(2015. 4월) 임시회 시 2014. 10월 아파트분양사(대림)의 통보에 따라 교리2지구 공동주택 매입의무가 소멸되어 공무원 아파트 취득 방식을 분양매입에서 신축으로 변경하였으나,

- 이번 회기 시 교리2지구 환지를 매각·처분하고,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에서 분양매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선산교리2지구 환지 28B 2L 토지 42,376㎡(12,819평)를 매각하고 당초 선산교리2지구 28B내에 공무원아파트를 신축하려던 것을 환지 매각할 선산교리2지구 28B 2L내의 아파트 100세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관리계획안은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관내 아파트 신축, 재건축 추진 등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현시점에 지역의 공동주택보급을 활성화하고 선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지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, 지난 4월 결정된 사항이 불과 5개월 만에 변경되는 등 본 관리계획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 론 요 지 : 생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